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56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
위원회(2020년 9월 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함
(안 제8조제2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				권고사유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조항	
1	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	소외계층 우범지역	취약계층 취약지역	14	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 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“소외계층”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“취약계층”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에너지계획) ① (생 략)</p> <p>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</u>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~ 10. (생 략)</p> <p>③ 삭 제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8조(에너지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에너지취약계층</u> ----- ----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